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42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양정숙·한준호·최강욱

이상직 • 문진석 • 김용민

김남국 • 권칠승 • 황운하

이수진 · 김회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는 2003. 12. 31.부터 2017. 12. 31.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「세무사법」이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.

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협의과정을 거쳐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, 국회 기재위 대안 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법원행정처와법무부, 대한변호사협회, 헌법학계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.

이에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'세무사로서'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

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시키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0조의2).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[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3호(법률 제10624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)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제외한다]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항에"를 "제1항제1호에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20조의2제1항"으로"를 "제20조의2제1항제1호계5 라고, 같은 조에 시설한다.

- 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
- 2.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 으로 보는 사람
-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2, 제4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2조의6제2항, 제13조, 제14조, 14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

조(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 및 제8장을 적용한다. 이 경우해당 조문 중 "세무사"는 "변호사"로, "한국세무사회"는 "대한변호사협회"로, "제6조"는 "제20조의2제1항제2호"로 본다.

④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 록한"으로 한다.

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9항제3호 중 "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"를 "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"으로 한다.

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제3호 중 "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"를 "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"으로 한다.

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20조의2(다른 법률에 따른 세 제20조의2(다른 법률에 따른 세 무대리) ① 「공인회계사법」 무대리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[법률 제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 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 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 칙 제2조제1항제3호(법률 제10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624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) 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 사는 제외한다]이-----1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<신 설>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2. 「변호사법」 제7조에 따라 <신 설> 등록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5 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 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② 제1항제1호에-----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, 제4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

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 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 (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 및 제8장을 준용한다. 이경우 해당 조문 중 "세무사"는 "공인회계사"로, "한국세무사회"는 "한국공인회계사회"로, "제6조"는 "제20조의2제1항"으로 본다.

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.

<신 설>

---<u>"제20조의2제1항제1호"로</u>--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대 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 1조의2, 제4조, 제9조부터 제12 조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2조 의5까지, 제12조의6제2항, 제13 조, 제14조, 14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(같 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 및 제8장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"세무사"는 "변 호사"로, "한국세무사회"는 "대 한변호사협회"로, "제6조"는 "제20조의2제1항제2호"로 본다. ④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